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할인을 상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 기일이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의 만기가 90일 이내인 경우는 17%, 어음의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예전에 비해 많이 상승된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한편, 최근 장기어음의 교부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자금난과 연쇄도산의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90일 이상의 장기어음으로 교부하는 것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음할인료를 기존의 12.5%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98년 5월 12일부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의 만기가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17%, 어음의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이번에도 상향 조정된 어음할인료 고시의 개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어음에의한下都給代金支給時의割引率告示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8. 5. 12

공정거래위원회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4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어음의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연 17%로 하며, 어음의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로 한다.

附 則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에 대해서는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5호)를 적용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5호(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는 폐지한다.